

등록금심의위원회

1. 회의제목 : 등록금심의위원회(22.10.19)

2. 회의일시 : 2022-10-19 수 16:00 ~ 16:50

3.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6명	이상무,사공영호,박재현,황유나,오윤지,김봉한
불참인원	3명	구자경,서경숙,안호기

5. 회의안건

- 가)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 나)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변경 사용 보고

6. 내용첨부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_2022.10.19_최종.pdf 별첨

7. 의 견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2.10.19

위원장	이상무	2022/10/24 확인
위원	사공영호	2022/10/21 확인
위원	박재현	2022/10/21 확인
위원	황유나	2022/10/21 확인
위원	오윤지	2022/10/21 확인
위원	김봉한	2022/10/24 확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2. 10. 14.(금)
위원정수 : 9명	재적위원 : 9명

1. 회의일시 : 2022. 10. 19.(수) 16:0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6명)	이상무, 사공영호, 김봉한, 박재현(학), 오윤지(학) 황유나(학)	간사 : 손명현 서기 : 임수현
불참인원 (3명)	구자경, 안호기(외), 서경숙(동)	-

4. 안건

가)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나) 임의특정목적기금(응자상환) 용도변경 사용 보고

5. 회의내용

가)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이상무 위원장(이하 "위원장")의 사회로 등록금심의위원회 재적인원 9명 중 6명이 참석하여 회의가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최하고, 손명현 간사(이하 "간사")가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 박재현 위원 : 추후에 결산을 진행할텐데 그럼 굳이 추가경정예산을 할 필요가 있나?
- 임수현 서기 : 해당 학년도 시작일시는 3월 1일이다. 이를 계획하는 시점은 전년도 10~11월쯤이다.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업을, 얼마의 예산으로 운영할지 예상하여 작성하는데 이는 말 그대로 계획이다. 막상 회계년도가 시작되면 변동이 생긴다. 예산 사용 용도에 따라 계정을 변경해야 하는데 계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경정예산을 세우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현재 학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에 가깝게 간극을 맞추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 간사 :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격차를 줄인다고 표현한 것이다. 최초의 계획과 다르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어 이를 맞추는 것이다.
- 사공영호 위원 : 대관수입이 약 11억정도 되는데 어떠한 항목들이 포함되어있나?
- 김봉한 위원 : 대관수입이 아니라 대여료 및 사용료이기 때문에 생활관도 포함이다.
- 위원장 : 생활관비와 더불어 제 2피어선빌딩의 임대료 역시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 김봉한 위원 : 예전에는 생활관비만 10억정도였기 때문에 이는 큰 금액이 아니다.

- 위원장 :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더이상 질의가 없다면 동의·재청해 주길 바란다.

(김봉한 위원의 동의와 박재현 위원의 재청으로 2022학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변경 사용의 건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의결하다.)

나)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용도변경 사용 보고

간사가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 349,988,252원 및 임의특정목적기금(용자상환)을 해지 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3,316,208원을 비등록금회계(운영비)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이는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된 사항임을 보고하다.

- 박재현 위원 :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은 적자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를 사용한다해도 실질적인 적자가 해결되긴 어려운 것 아닌가?

- 위원장 : 맞다. 그러나 올해 재정상황상 적립금을 인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인출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 재정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총장님과 각 처장님들,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보고를 종료하다.)

6. 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와 보고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위원의 건의와 전체 위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6시 50분에 폐회하다.

2022. 10. 19

